

문화체육관광부, 인구감소지역에 '소규모 관광단지' 조성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
2024.1.4.

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*에 한해 '소규모 관광단지 제도'를 도입하고,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.

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현재 총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 시·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, 지속되는 저출산·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**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하였다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중 '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'을 반영하여 「관광진흥법」을 개정할 계획이다.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,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.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,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다.

<지정기준>

지정 규모: (기존) 50만 제곱미터 이상 → (신설) 5만 제곱미터 이상, 30만 제곱미터 미만
지정 필수시설: (기존) 3종 이상 → (신설) 2종(공공편익시설, 관광숙박시설) 이상

<지정·승인권한>

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: (기존) 시·도지사(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)
→ (신설) 시장·군수(지정 전 시·도지사 사전협의)

이외러 소규모 관광단지도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취득세 감면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,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.

이 외에도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이를 통해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,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.

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(80개 시·군)

** 통근·통학·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(외국인 등록지,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)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